

오피니언

월/요/광/장

구길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일반 행사 범의 공소시효기간이 최소 1년인 것에 비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짧은 것은 선거사법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경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곁 석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당사자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선거범죄의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기간 동안 임기를 채우려는 행위를 예상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 이외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 기간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살펴본다.

첫째, 당선인 자신이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한해 벌금 150만원 이상이며 당선무효가 됐으나 1994년 통합 공직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그 대상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이 규정이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한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한이 적정한가에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도 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벌금형의 하한이 높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원에서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어 당선무효가 된다. 이러한 입법의 연혁이나 사례들을 살펴보면 벌금 100만원의 하한을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선무효 기준 적정한가

같은 당선무효기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당한 내용의 선거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까지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판단해 궁지에陥으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벌금 90만원의 혐은 일반 형사 범의 경우 좀처럼 선고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다. 게다가 일반 형사범의 경우 경제성장에 맞춰 요즈음은 사소한 범죄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예컨대 불법기부 행위를 한 당선자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반면, 동네 마트에서 뺨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될

둘째,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환경부에 따른 소대장 이상, 통장·반장, 바르게살기협회 등의 상근 임직원 등에서 즉시 퇴직한다는 규정이다. 즉,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군청 직원이나 마을 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즉시 퇴직하고, 5년간 그 직에 임용될 수 없다.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직업공무원 등에게 퇴직의 명예를 죽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가혹해 보인다. 공무원이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

우 정역형의 징역형에 이상을 선고받아야 퇴직한다는 법조항과 비교하면 그렇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재선, 3선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 예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전남에 있는 어떤 군의 마을 이장단이 현직 군수를 위해 지지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들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그 중 상당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상당수 이장들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공직자들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퇴직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핵심을 짜른다. '성희롱 교육이나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 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 선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명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호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온 국민 하나로 만든 그리스전 승전보

태극전사들이 2010 남아공월드컵 그리스와의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한국시간) 열린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공수에 걸쳐 그리스를 압도하며 2대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 승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한국인 감독으로는 사상 첫 번째 본선 승리인데다 당초 목표인 '원정 16강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낙관은 물고이다. 17일 경기를 가질 아르헨티나와 23일 맞붙을 나이지리아 등 나머지 두 나라는 결코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극전

사들이 그리스와의 경기에서처럼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승리의 여신은 대한민국에 미소를 보낼 것이다. 남아공 현지의 일교차와 강풍, 고지대 적응 역시 쌓아온 훈련의 양과 다져온 의지로 극복하지 못할 리 없다.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인류 최

잇단 사건에도 여전히 허술한 학교 안전망

최근 학교 주변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초등학교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그것도 별건 대낮에 여덟 살 어린 아이가 납치돼 성폭행 당한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학교와 그 주변의 어린이 보호·안전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충격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서울 초등학교 교내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초등학교 안전망을 점검한 결과 학교 입구를 지키는 경비실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한다. CCTV도 시설물 보호나 도난사고·학교폭력 예방 위주로 학교 건물이나 교사 뒤편에 배치돼 있어 납치와 같은 강력사건에는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당장 허물기 사업'과 학교 개방이 이뤄지면서 초등학교의 출입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7년 학교경비 등을 위해 도입된 '학교안전요원'도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탓에 낮 시간대 경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망은 구멍이 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조치는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학교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민족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프랑스,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처럼 어린이 성폭행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다. 지금이라도 당국과 지역사회는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강화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금남로는 늘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와 인파로 부산하다. 종종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행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 걸까. 경쟁과 속도가 최대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삶은 삐딱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 외중에도 밤길을 멈추고 바라보며 때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미소를 짓게 하는 정경이 있다. 금남로 5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린 글판이 그 것이다.

'너와 난 각자의 화분에서 살아가지만 헛빛을 함께 맞는다는 것!' 이달 들어 글판에 실린 힙합(hiphop) 뮤지션 키비(Kebbe)의 '자취일기' 한 구절이다. 인간이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지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면 언제든 소통의 공간에 나와 서로 기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시작된 교보생명 글판이 올해로 스무살이 됐다. 영암 출신으로 교보생명을 창립하고 대신문 화재단과 교보문고를 만드는 등 문화·예술에 잊고 살았던 시심(詩心)을 일깨운다. 도전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로 마음의 여유와 긍정의 힘을 심는다. 이는 또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양분이 되기 충분하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 한 줄의 시를 쓸 때까지' 금남로 시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에서 잊고 살았던 시심(詩心)을 일깨운다. 도전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로 마음의 여유와 긍정의 힘을 심는다. 이는 또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양분이 되기 충분하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 한 줄의 시를 쓸 때까지' 금남로 시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舉辦人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 2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 2부 2200-661	문화 2부 222-8005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79	독자서비스국 2200-651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광고마케팅국 227-9500
사 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디자인 2200-536
(F A X 222-4267)	조 친 부 2200-571	서울지사 02-773-9335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정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3년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사건 중 두 사건은 모두 평소 알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접한 딱한지 사건을 맡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접한 딱한지 사건을 맡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아직 미혼인 젊은 남성이나 아이를 길러 본 적이 없는 고령의 남성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식의 정도가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선정된 이후의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무게와 이 사건 당시의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한 변론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하여 하는 재판의 특성상 어

려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변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배심원들과 함께 '이 사건의 실제적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간단한 메모지 한 장면을 가지고 배심원석 앞으로 나아가 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하루 종일 장시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또다시 장문의 원고를 낭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들에게는 배심원들이 저지른 경

기고

이상태



나는 가끔 영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한다. '빛을 빛의 속도로 쓰아야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시간과 공간 관념에 혁명을 가져다준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 된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누구도 생각 못했던 변화는 발달은 창의성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창의성을 신이 내려준 선물, 즉 타고난 재능으로 보았다. 유명한 교육자이며 철학자인 플라톤마저도 '시인은 뮤즈가 구슬해 주는 것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창의성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운으로는 아니지만 창작은 창작자에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나는 뮤즈를 창의성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시대의 삶은 삐딱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 외중에도 밤길을 멈추고 바라보며 때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미소를 짓게 하는 정경이 있다. 금남로 5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린 글판이 그 것이다.

'너와 난 각자의 화분에서 살아가지만 헛빛을 함께 맞는다는 것!' 이달 들어 글판에 실린 힙합(hiphop) 뮤지션 키비(Kebbe)의 '자취일기' 한 구절이다. 인간이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지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면 언제든 소통의 공간에 나와 서로 기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시작된 교보생명 글판이 올해로 스무살이 됐다. 영암 출신으로 교보생명을 창립하고 대신문 화재단과 교